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 : 서준오, 경기문, 김경훈,
김기덕, 김동욱, 김성준,
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
박수빈, 박승진, 박영한,
박유진, 박철성, 박환희,
봉양순, 소영철, 송경택,
송도호, 유만희, 유정인,
이민옥, 이병도, 이상욱,
이상훈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만균,
정준호, 정진술, 최민규,
한 신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- 무분별한 자가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시에 그 지원한 비용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
나.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3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안전진단 비용의 지원)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